

□ 관세법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 개정안 신규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1조(목적) 이 훈령은 「관세법」 제311조, 제312조, 제3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0조의2에 따라 관세법에 대하여 고발의 대상과 기준 및 통고금액의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엄정하고 공정한 처벌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, 같은 법 시행령 제270조의2 및 제271조에----- -----통고처분에 관한----- -----.</p>	<p>통고처분 관련 제반사항을 정하는 훈령으로 수정</p>
<p>제2조(관세법의 처리) ① (생략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(생략) 3. 「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」(이하 “환급특례법”이라 한다) 4. (생략) 5.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FTA특례법”이라 한다) <p>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관세법을 고발하는 경우 과형의견(벌금양정)은 제3조를 준용한다.<후단 신설></p>	<p>제2조(관세법의 처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(“관세환급특례법”-----.)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 ----- (“FTA관세법”----- ----- <p>② ----- 「관세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70조의2 제1항</p>	<p>법제처 공식 약칭 반영</p> <p>법제처 공식 약칭 반영</p> <p>양정 기준 근거 현행화</p>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범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통고처분 할 수 있다.</p>	<p>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. 이 경우, 양정액의 가중·감경과 단수계산에 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.</p> <p>③ <u>세관장은 제1항</u>----- ----- ----- --.</p>	<p>주어 명확화</p>
<p>1. ~ 5. (생략)</p>	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	
<p><신설></p>	<p>6. <u>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통고처분 사전승인 신청을 의결한 경우</u></p>	<p>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개정 사항 반영</p>
<p>제3조(통고처분 가중·감경 사유 기재 등) ① 법 제311조, 「관세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7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「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·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하거나, 가중 또는 감경사유에 해당하나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하는 때</p>	<p>제3조(통고처분 가중·감경 사유 기재 등) ① -----, 영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	<p>제2조 개정 따른 중복문구 정비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에는 그 사유를 통고처분확인서 또는 통고처분문답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편철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
<p><신설></p>	<p><u>제4조(통고처분의 취소·변경) 세관장은 법 제31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관세범이 해당 통고처분을 이행하기 전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</u></p>	<p>통고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예규 통합</p>
<p><신설></p>	<p><u>제5조(벌금 상당액 등의 예납) 세관장은 통고처분 대상자가 법 제311조제2항 및 영 제271조에 따라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벌금 등 상당액 예납신청 및 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, 통고처분 대상자에게 보관증을 교부한다.</u></p>	<p>예납금 잔금 환급 예규 통합 (제5조~제6조)</p> <p>예납 신청 절차 명확화</p>
<p><신설></p>	<p><u>제6조(예납금의 잔금 환불) ① 세관장은 제5조에 따라 예납 시킨 금액으로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충당하고 잔금이 발생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예납한 통고</u></p>	<p>예납금 잔금 환급 예규 통합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<신설></p>	<p><u>처분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예납 잔금에 대하여 환불을 의뢰한다.</u></p> <p><u>② 세관장이 예납 잔금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 통고처분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은행(온라인)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</u> <u>2. 우편(통상환)으로 송금하는 방법</u> <u>3.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세관에 방문하여 영수하는 방법</u> 	
<p><신설></p>	<p><u>③ 세관장이 예납 잔금을 환불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른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제2항제1호에 따른 환불은 통고처분 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벌금상당액등 예납신청 및 납입의뢰서에 기재된 계좌에 입금 후 무통장 입금증을 관련 통고처분 사건서류에 편철한다.</u> <u>2. 제2항제2호에 따른 환불은 통고처분 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벌금상당액등 예납신청 및 납입의뢰서에 기재된 주소지</u> 	

현행	개정안	비고
	<p><u>로 우편 송금하고 송금증을 관련 통고처분 사건서류에 편철한다.</u></p> <p>3. <u>제2항제3호에 따라 통고처분 대상자 본인이 세관에 방문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잔금을 환불하며, 신분증 사본과 본인 서명 영수증을 관련 통고처분 사건서류에 편철한다.</u></p> <p>4. <u>제2항제3호에 따라 대리인이 세관에 방문한 경우에는 통고처분대상자의 인감증명서, 본인 서명사실확인서,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하나와 위임장을 받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환불하며, 확인한 서류와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서명 영수증을 관련 통고처분 사건서류에 편철한다.</u></p>	
<p>제4조(재검토기한) 관세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<u>2018년 7월 1일</u>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	<p>제7조(재검토기한) ----- ----- -----<u>2023년 7월 1일</u>----- ----- -----.</p>	

현 행			개 정 안			비 고
[별표] 고발 기준(제2조제1항 관련)			[별표] 고발 기준(제2조제1항 관련)			관세사법 개정사항 반영, 법제처 공식 약칭 반영
구분		고발(송치)	구분		고발(송치)	
(생략)	(생략)	(생략)	(생략)	(생략)	(생략)	
관세사법	- 제29조제1항, 제2항, <신설>	- 해당사건 전부	-----	-----, 제3항	-----	
환 급 특례법	(생략)	(생략)	관세환급 특례법	(생략)	(생략)	
(생략)	(생략)	(생략)	(생략)	(생략)	(생략)	
FTA 특례법	(생략)	(생략)	FTA 특례법	(생략)	(생략)	
<신 설>			[별지서식]			예납 신청서식 신설

